

산학협력시스템 및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 설명회

2021. 3. 4.



CONTENTS

01 인사말

02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일부 개정사항 설명

03 신규 산학협력시스템 사용 설명

04 질의응답



01

인사말

산학협력단장 김정현 교수



02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 일부개정


발표자 : 경영지원팀 양수정 팀장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시행으로 변경사항 반영 필요
- ▶ 산학협력단 역할·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체계 강화
- ▶ 지침 구성을 제~장, 조, 항, 호, 목 기준으로 개편하여 지침 체계 확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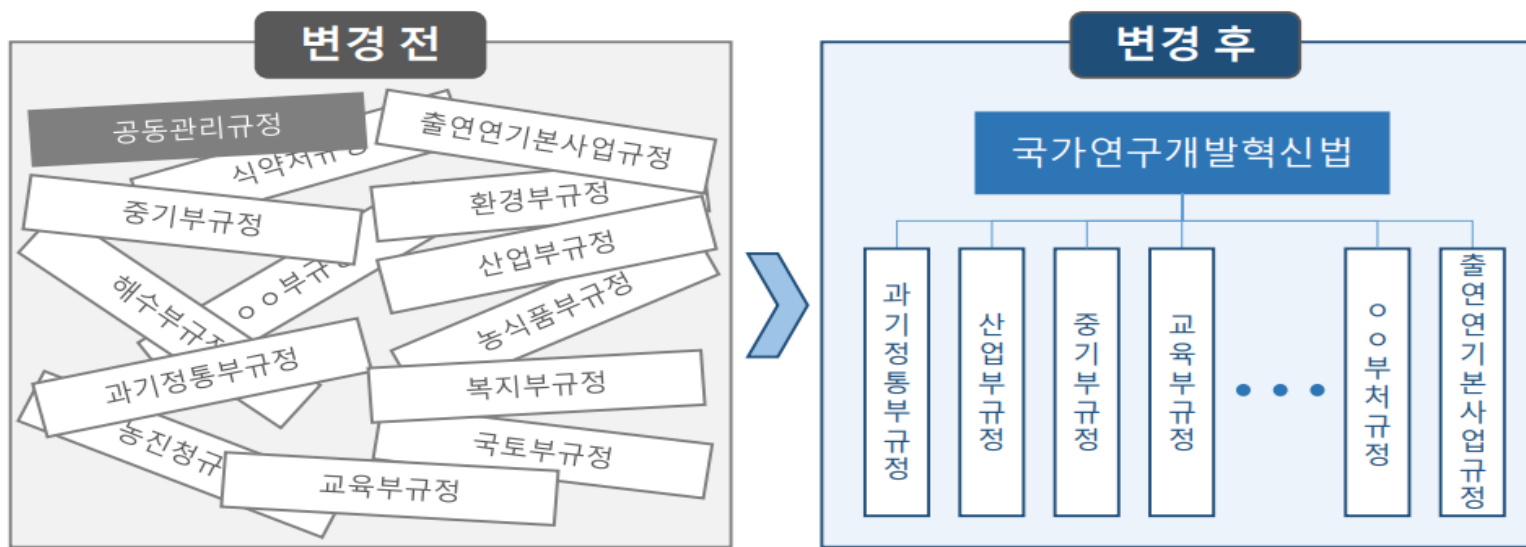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 2021. 1. 1 시행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 체계화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이 혁신법으로 일원화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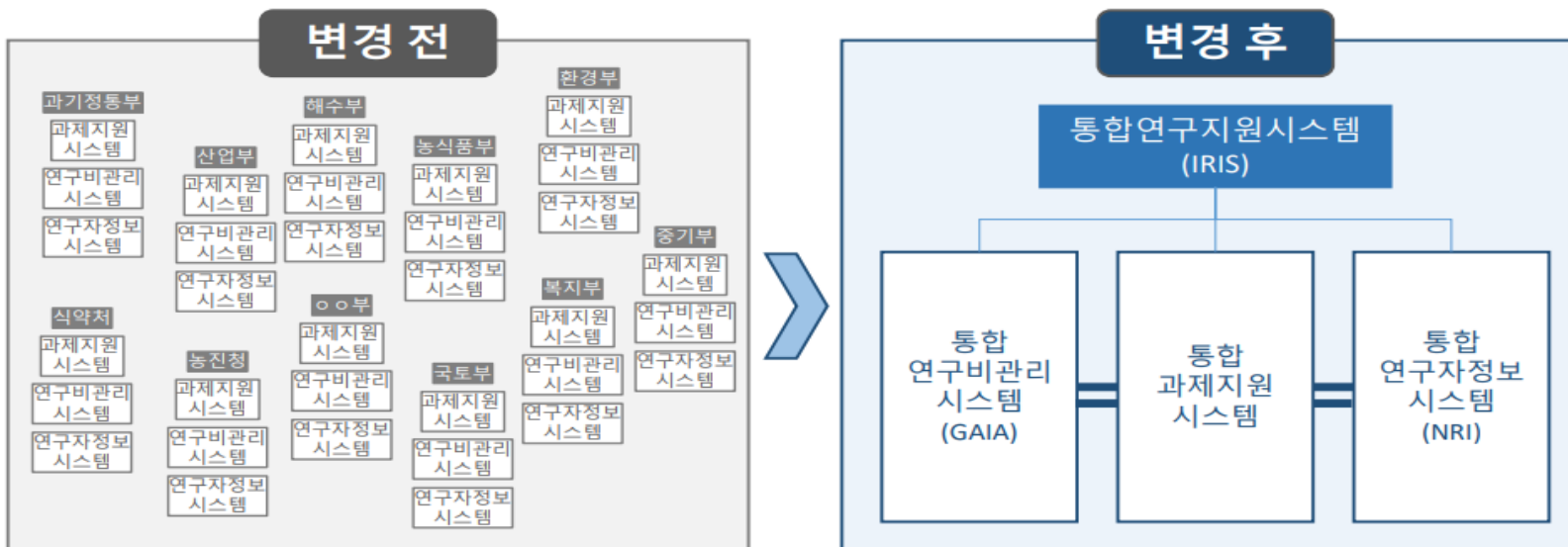
“ 부처별 상이한 규정에 따른 연구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겠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지원시스템이 통합(IRIS)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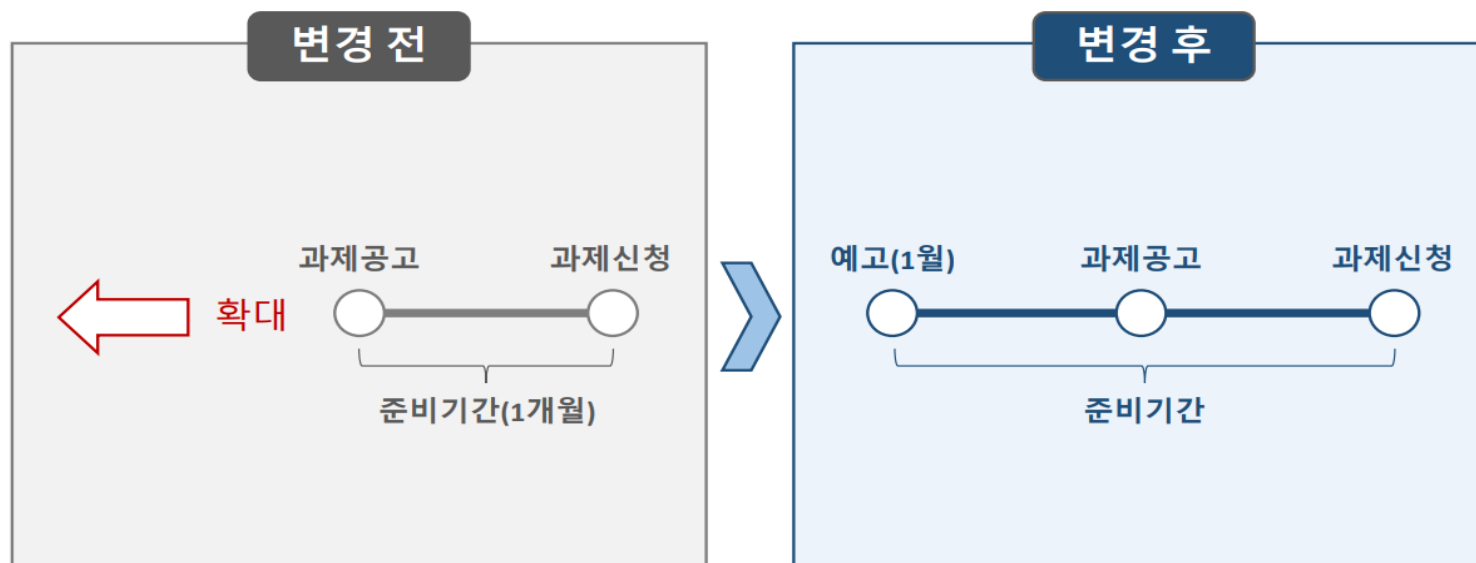
“ 부처별 시스템 운영에 따른 연구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고 제도가 신설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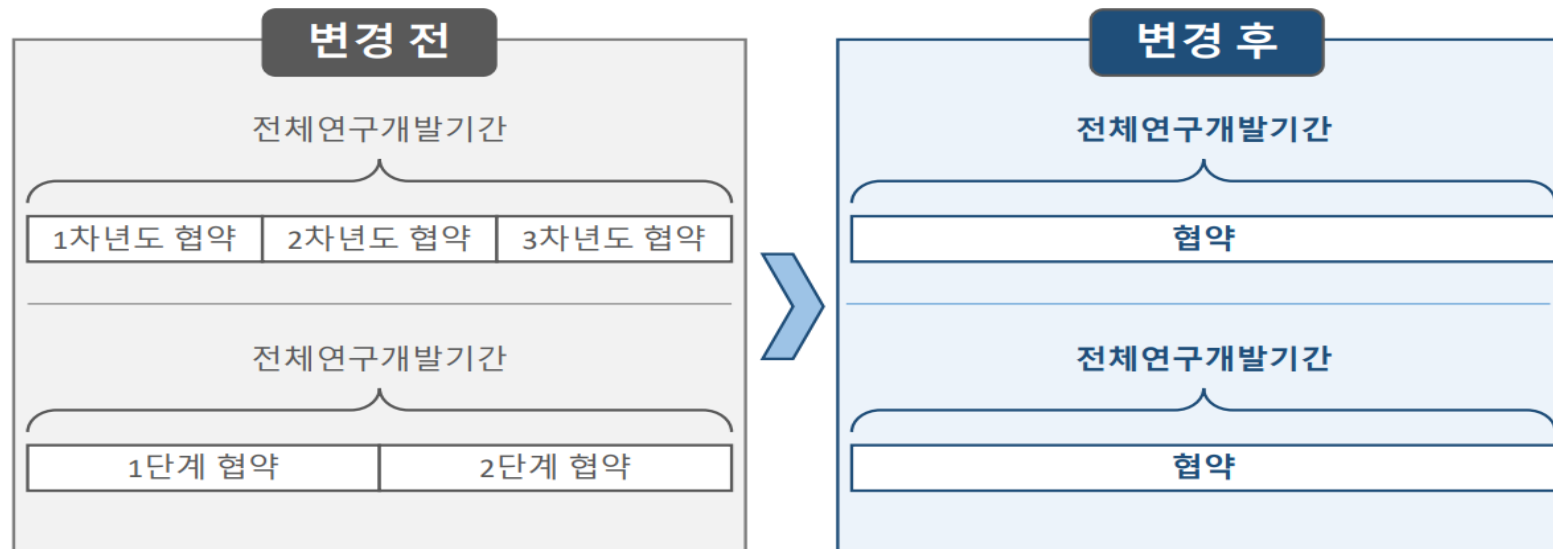
☞ “ 연구자가 미리 과제 공고를 파악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과제 협약기간이 전체 연구개발기간과 일치됩니다!

☞ “ 다년도 과제는 중장기적 시각으로 지원·관리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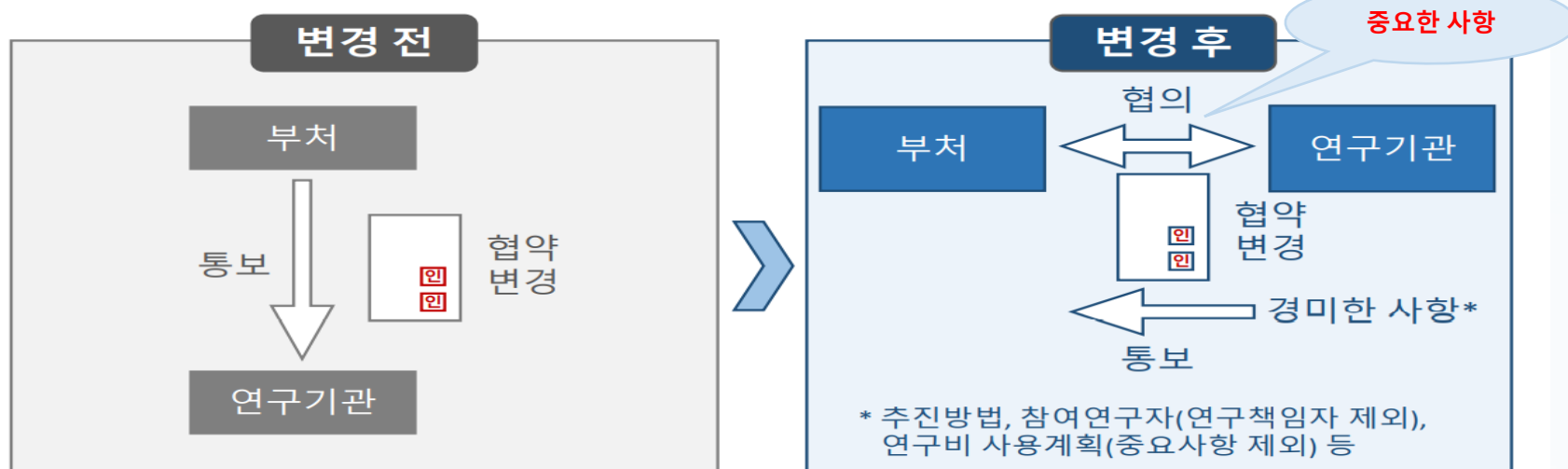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연구기관의 과제 협약 권한이 확대됩니다!



“ 연구기관/연구자의 연구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 **중요한 사항** :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기관 변경, 연구비 총액변경, 연구기간 변경 등으로 열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연구비 사용계획 간소화: 과제 수행 비용은 연구비 사용계획에 명시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하겠습니다 ”

변경 전

	참여연구자	참여율	금액	계	
인건비					
	내역	수량	단가	금액	계
연구시설장비비					
	내역	수량	단가	금액	계
연구재료비					
	내역		금액	계	
연구활동비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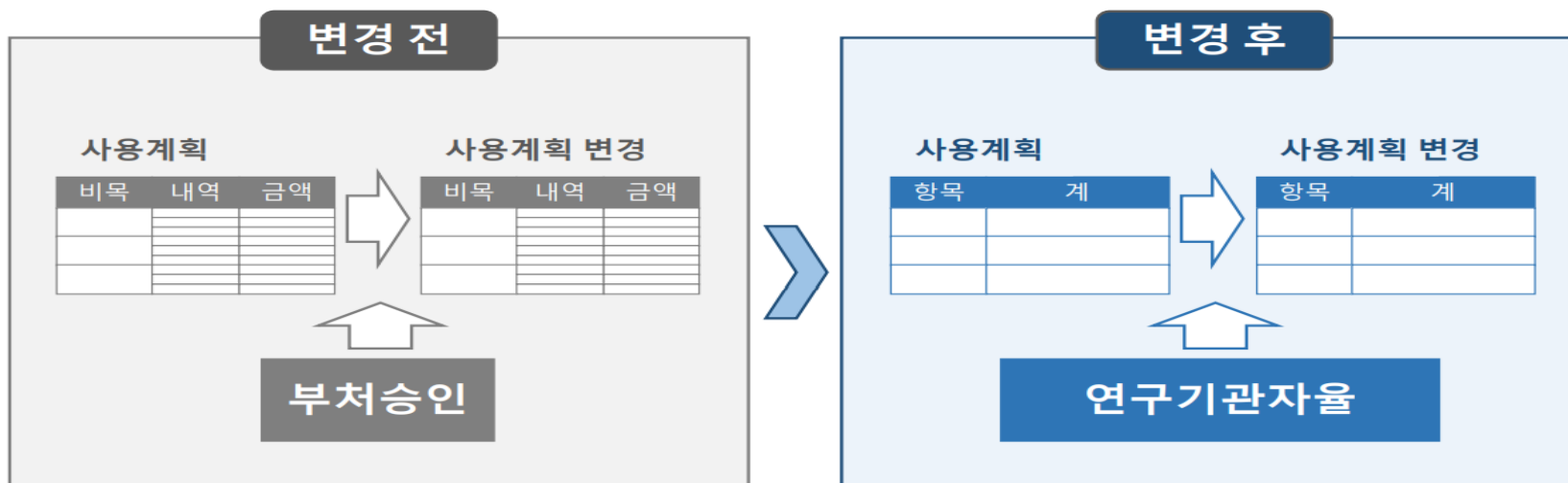
	참여연구자	계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계	
연구재료비	계	
연구활동비	계	

* 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는 내역 작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연구비 사용계획은 연구기관/연구자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예외적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 승인 필요함
 : 단계별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연도별 연구개발비 지원·부담
 금액 변경, 간접비 총액 증액 변경,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관련 변경, 위탁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증액,
 다음 단계로 직접비 이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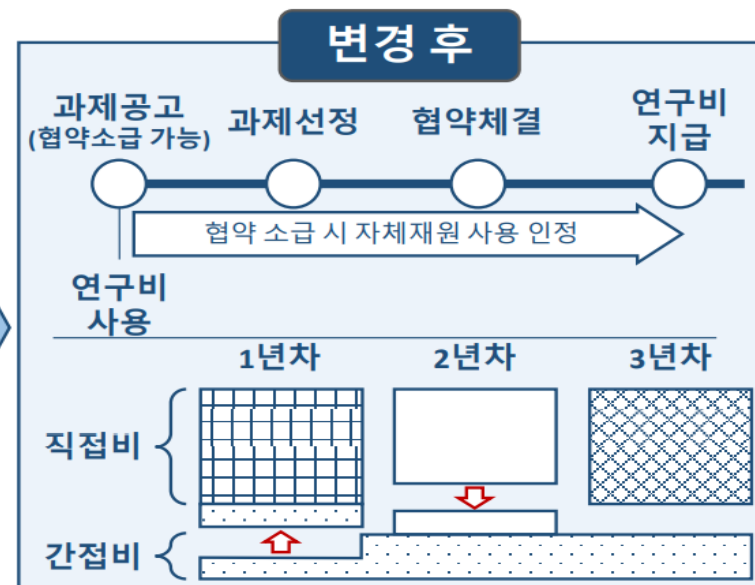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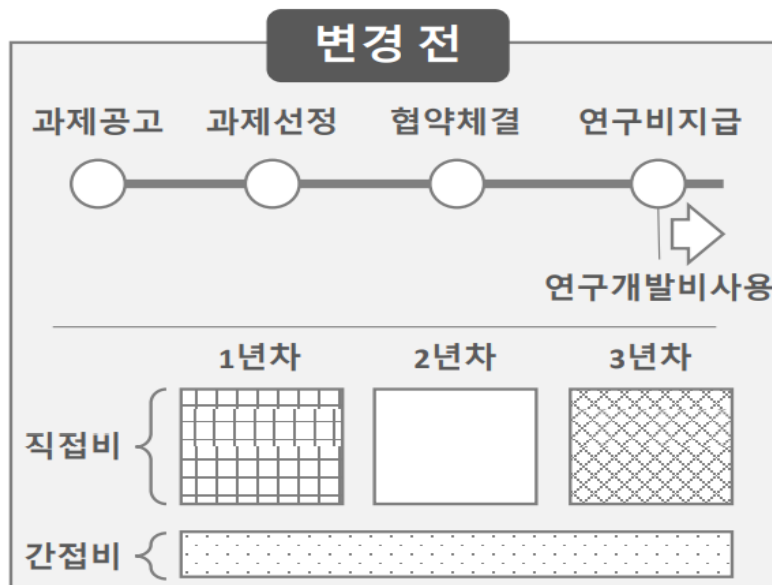

 선배정지원제도 활용


연구비 지급 지연 시 연구기관 자체재원 사용이 인정됩니다!



“ 적기의 신속한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

'20년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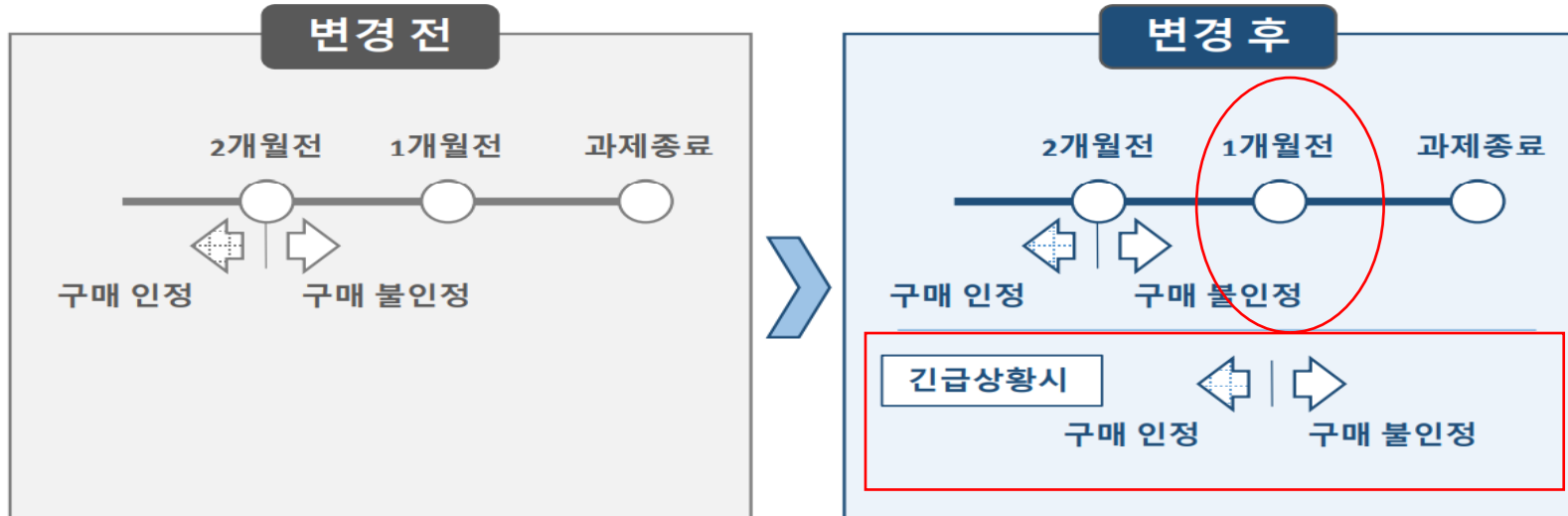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코로나 19,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중대한 사유

긴급상황 시 연구시설/장비 구매시한이 완화됩니다!

☞ “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긴급상황에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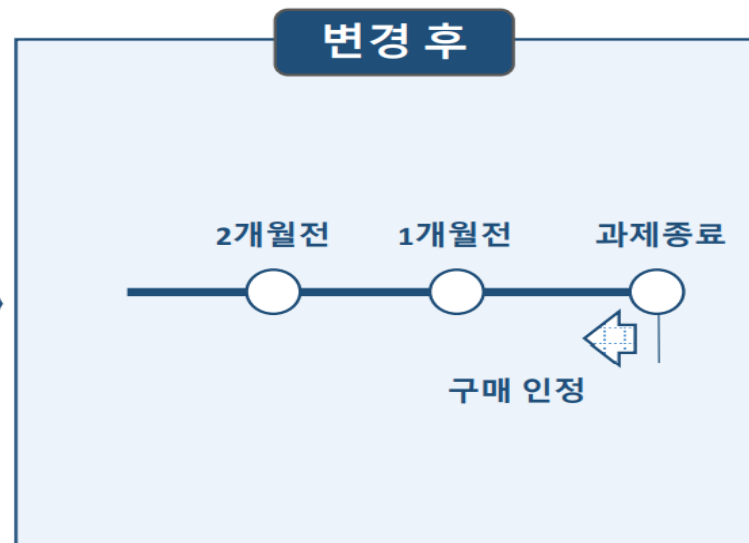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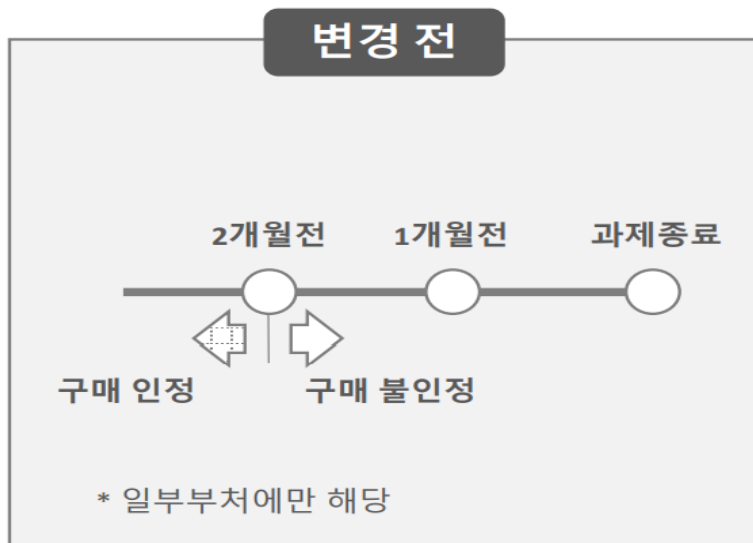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연구재료는 과제 종료 전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연구비 사용의 경직성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

'20년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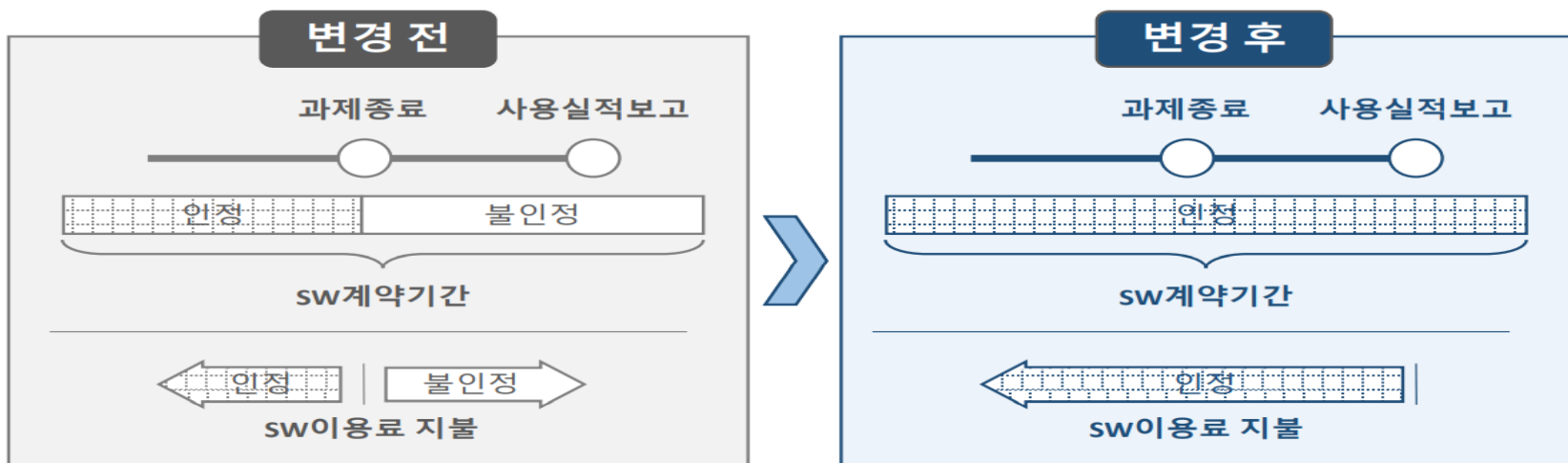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sw활용비는 과제가 종료되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구비 사용의 경직성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

'20년 제도개선



※ **최소단위 sw 사용계약기간** 과제기간 초과하더라도
계상 가능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활동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구지원 서비스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변경 전

연구근접지원인력 사용가능 연구비

인건비

간접비

* 단, 인건비와 간접비 중복지급 불가

변경 후


연구근접지원인력 사용가능 연구개발비

인건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 단, 인건비와 간접비 중복지급 불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전자문서는 종이로 보관하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확대 도입시기 및
세부사항 매뉴얼
별도 안내예정

변경 전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변경 후

카드매출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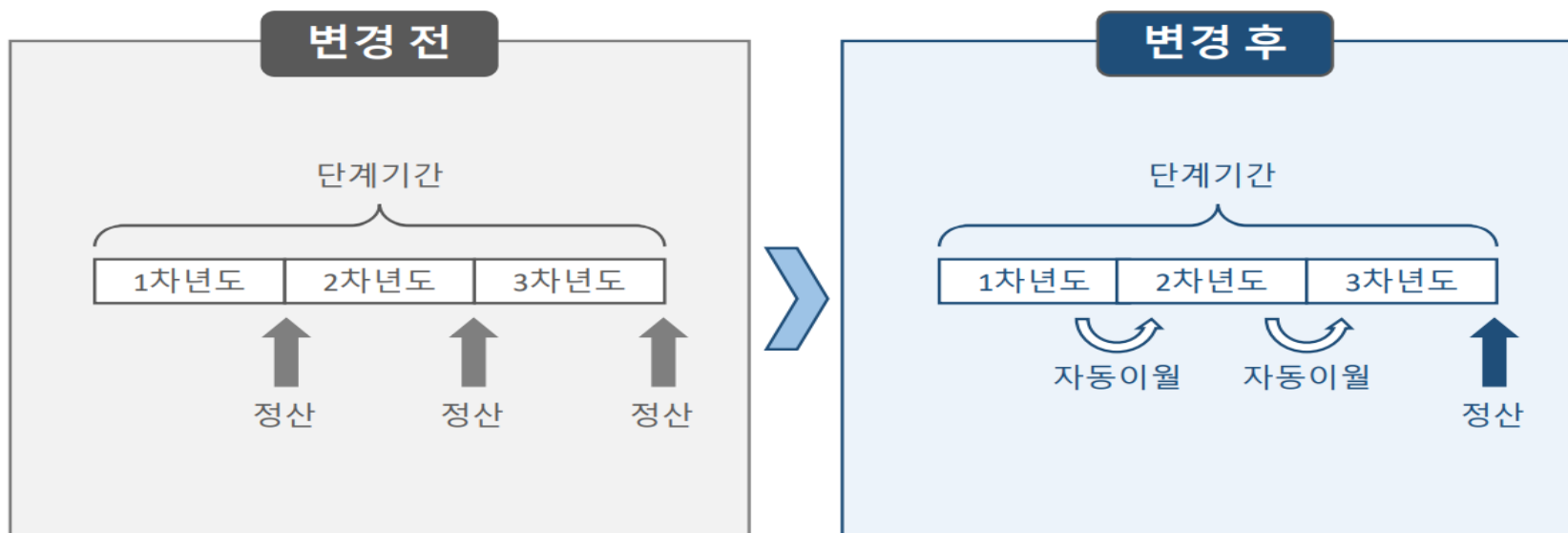
전자세금계산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연차정산이 폐지되고,
연구비가 단계 내 자동이월됩니다!**

 “ 정산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비 사용의 효율성을 높ی겠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연구비 사용 증빙이 간소화 됩니다!



“ 중복적인 자료 요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자정산 완전히
도입 되기까지
혼란 예상되나,
조속한 안정화 노력


변경 전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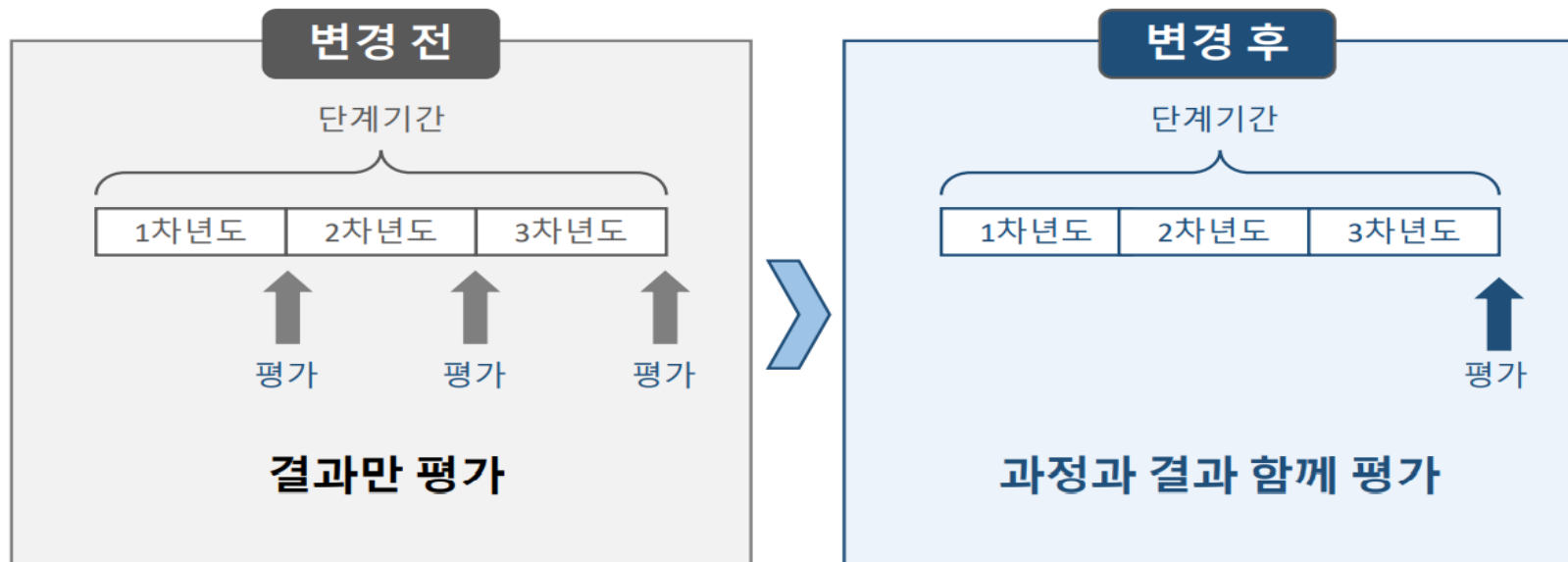



시스템 등록자료로 정산 원칙
오프라인으로 중복자료 요구 금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연차평가가 폐지되고,
과정도 함께 평가에 반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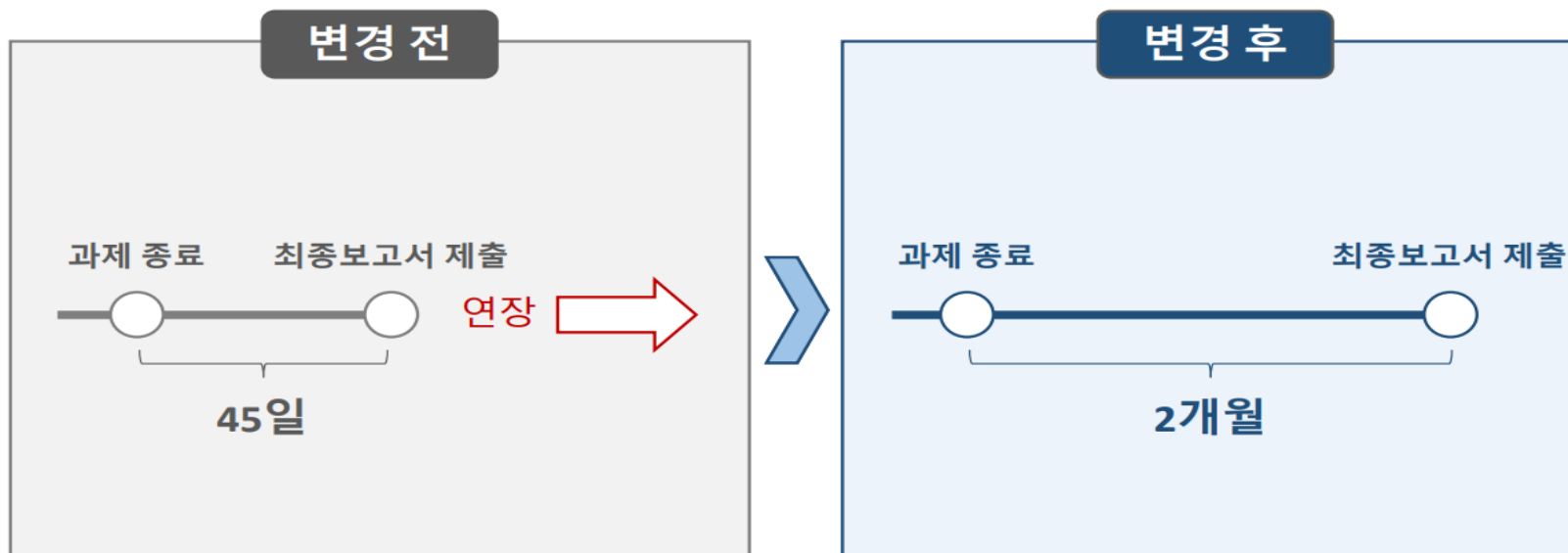
“ 창의적인 연구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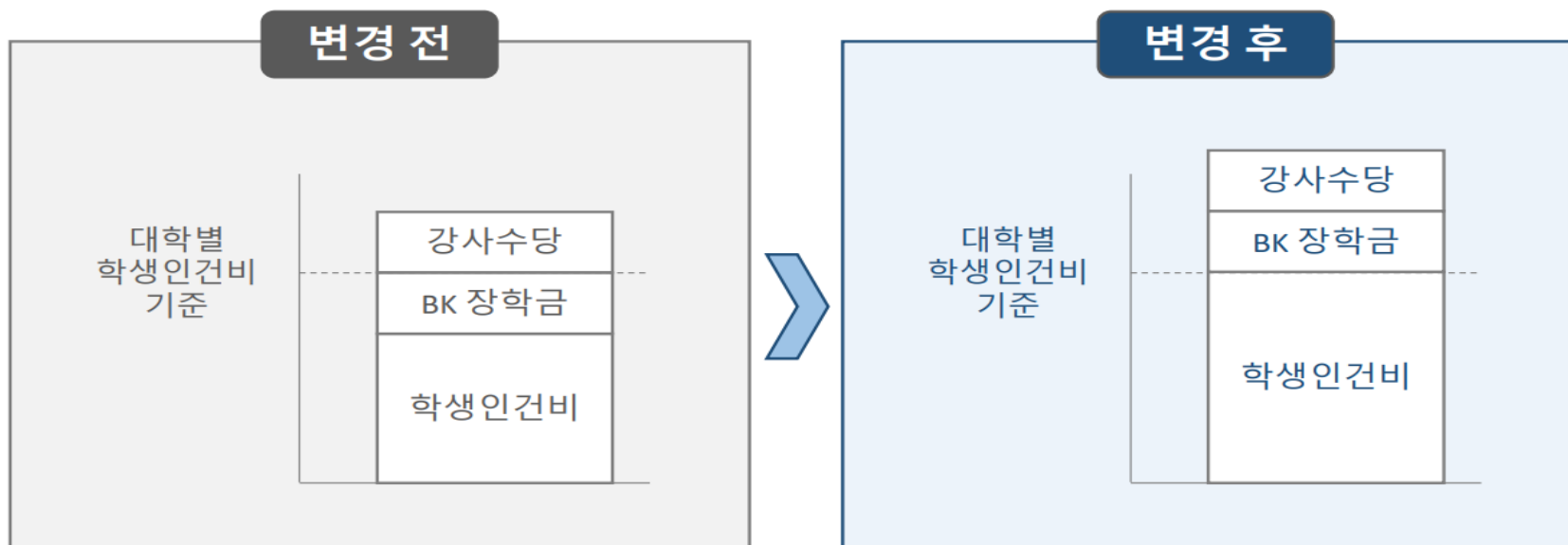

 “ 충실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 '20년 제도개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제한이 완화됩니다!

 “ 학생연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3책5공 제도가 완화 됩니다!



“ 연구 역량과 의욕 있는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변경 전

연구자의 의무사항

제외과제


6개월 내 종료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시험/분석연구
과제 조정/관리과제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연구
5천만원 이내 소액과제

변경 후

부처의 재량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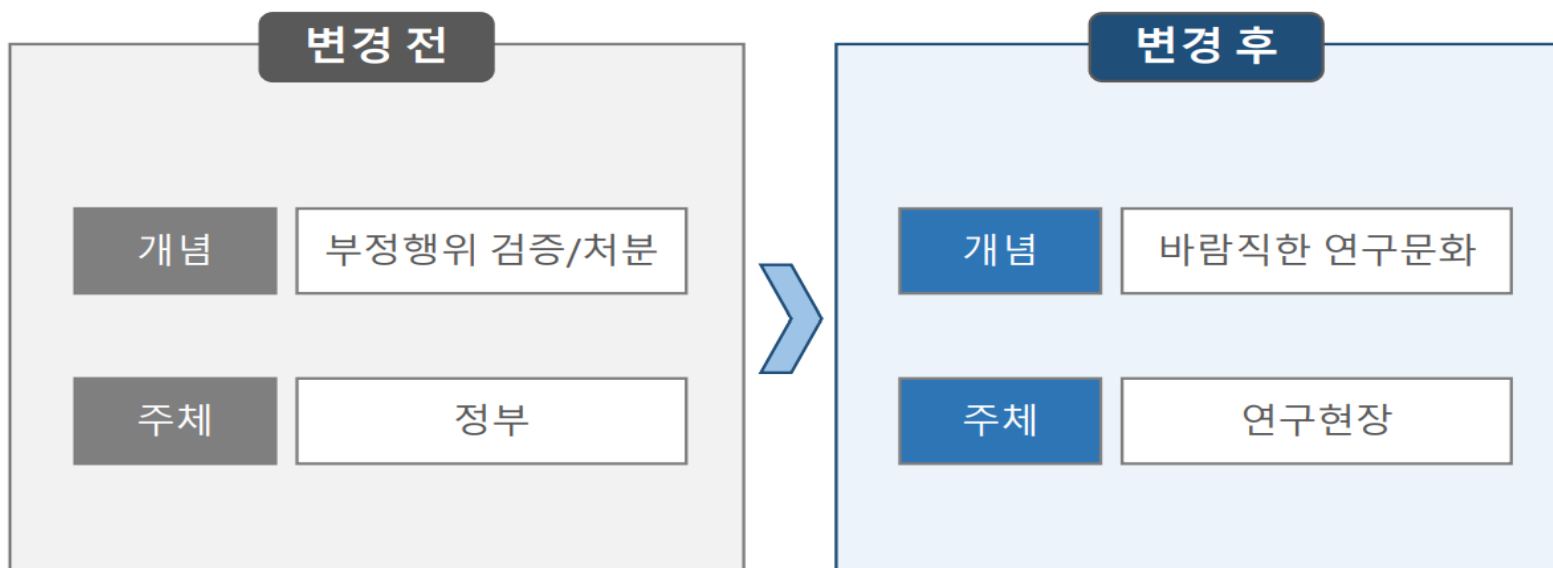
제외과제 확대


변경 전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인력양성, 기반구축,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과기자문회의 심의과제
(소부장, 코로나19, 탄소중립, 소액과제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연구현장 스스로 연구윤리를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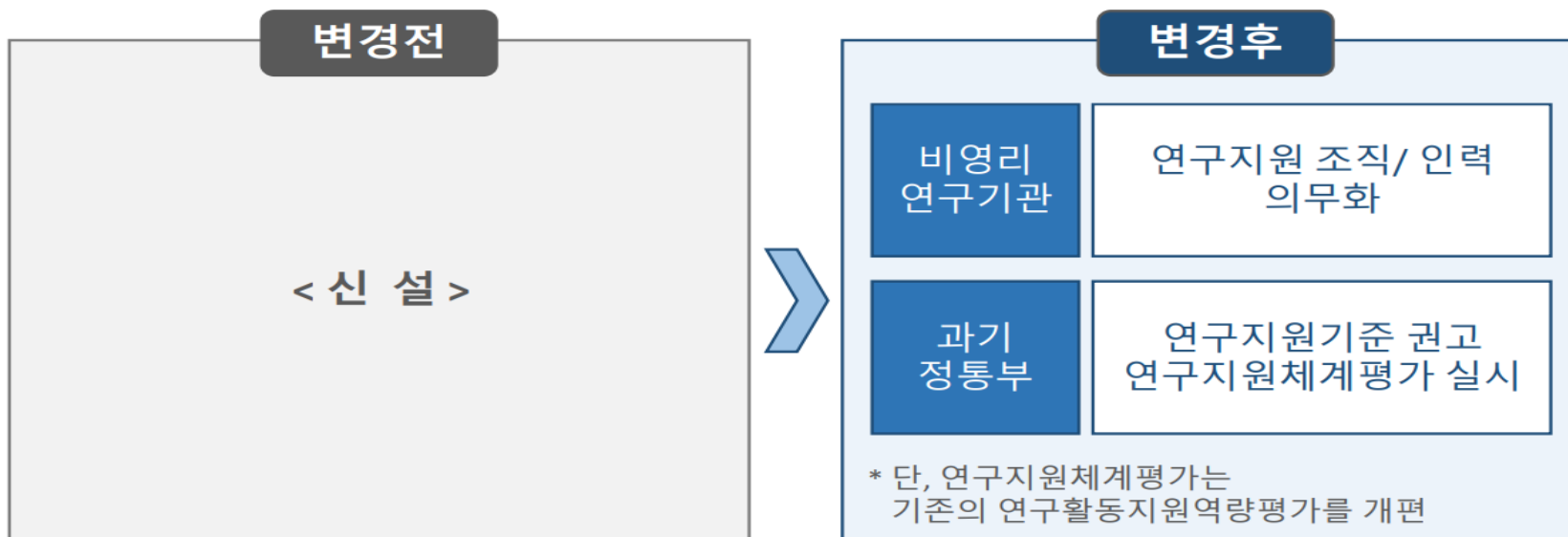
☞ “ 연구현장 주도의 바람직한 연구문화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이 체계화 됩니다!

 “ 연구지원 서비스 향상으로 연구성과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

- ▶ 주요 주체 별 책임과 역할 개정 : 산학협력단과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 ▶ 용어 변경
- ▶ 연구계획의 변경 시 절차 개정
- ▶ 연구비 사용용도 및 기준 개정
- ▶ 전자문서 보관 근거
- ▶ 연구비 부정행위 유형
- ▶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개정

주요 주체 별 책임과 역할 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산학협력단의 책임과 역할 명시 : 연구자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

- 제3조 연구과제 공모,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등 연구정보 제공 역할
- 제5조 연구과제 등록, 최초 실행예산서 등록 역할
- 제27조 사용실적 보고 전 종료감사 시행, 사용실적보고서 작성, 불인정사항 통보 역할
- 제43조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체계 강화 충실할 것

※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 포함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명시

-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구윤리 준수하여 연구에 충실할 것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


주요 주체 별 책임과 역할 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산학협력단의 책임과 역할 명시 : 연구자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


- ▶ 과제공고 자료 제공 : 공문, 이메일, 홈페이지 안내
- ▶ 연구지원 서비스 개선 설문조사 : 매년 2회 실시
- ▶ 연구과제, 산학협력, 연구실 홍보 플랫폼 역할
- ▶ 각종 연구지원사업 기획 및 수행

< 연구지원사업 예시 >

항목	세부지원내용
대학 연구활동지원	가. 중대형 연구과제 준비 지원 나. 대학 발전 정책 연구과제 지원 다. 연구과제 보증보험 및 인지세 지원 라. 연구 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지원(4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 포함) 마. 우수 연구교수 혹은 박사후 연구원 인건비 지원 (4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 포함) 바. 대학원생 연구실 환경 개선 지원 등

 용어 변경 혹은 신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원	연구자
참여율	인건비 계상률 인건비 지급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의 경우)
연구지원인력 (혹은 연구행정인력)	연구 근접지원인력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


 연구계획의 변경 시 절차 개정(제20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구분	중요한 변경	경미한 변경	자체승인사항
절차	사전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 필요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 및 산학협력단 승인
해당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기관 추가 혹은 변경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개발 목표 변경 연구개발비 변경 연구개발기간 변경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과제 추진방법 변경 연구책임자 제외 연구자 변경 연구개발비 사용 개괄적 계획 변경 연구근접지원인력 변경 그 외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협약 시 별도로 정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이 가능한 비목간 연구비 전용 등

주요 개정사항 - 비목별 산정기준-인건비

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대상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분, 퇴직급여충당금 기준단가 및 인건비 계상률에 포함	4대보험 기관부담분, 퇴직급여충당금 <u>기준단가 및 인건비 계상률에 불포함</u>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받는 근로계약 체결 연구자 혹은 연구 근접 지원인력
	4대보험기관부담분 월 급여의 10% 계상 원칙	4대보험기관부담분 월 급여의 <u>9%</u> 계상 원칙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 기준 없음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을 <u>월급여의 1/12</u> 로 명시	
	용역과제 인건비 (연구수당) 지급시기 불명확	용역과제 인건비(연구수당) 지급시기 <u>분기별, 과제시작일부터 3개월 모두 허용</u>	전임교원

주요 개정사항-비목별 산정기준-인건비


 기준단가 개념 개정

구분	개정 전
기준단가	4대보험 기관부담분,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시 월급여액 최대치(100% 계상 시)	기준단가 - 4대보험기관부담금(10%) - 퇴직급여충당금 (8.3%) <예시> 책임급 : 5,000천원-423천원-352천원=4,225천원

[별표1]직급별 기준단가표

구분	직급	월기준액 (원)	비고
연구자	별호	8,000,000	연구과제 참여 근로계약자 (연구교수, 박사후연구원,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
	수석	6,000,000	
	책임급	5,000,000	
	선임급	4,000,000	
	석사급	3,000,000	
	학사급	2,500,000	
연구근접 지원인력	별호	3,500,000	부설연구소 근로계약 연구지원인력
	석사급연구 근접지원인력	2,500,000	
	학사급연구 근접지원인력	2,200,000	

기준단가가 5백만원 이라는데,
근로계약서의 월급여는 왜 5백만원이
안되는 걸까?



책임급 연구원

주요 개정사항-비목별 산정기준-인건비


 기준단가개념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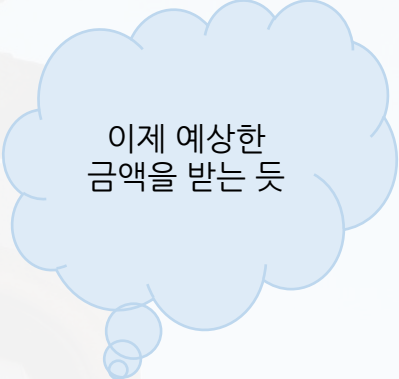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기준단가	4대보험 기관부담분, 퇴직급여총당금 포함	4대보험 기관부담분, 퇴직급여총당금 불포함
근로계약서 작성시 월급여액 최대치 (100% 계상 시)	기준단가 - 4대보험기관부담금(10%) - 퇴직급여총당금 (8.3%)	기준단가 까지 가능


[별표1]직급별 기준단가표

<월급여액 최대치 금액 변경>

구분	직급	월기준액 (원)
연구자	별호	8,000,000
	수석	6,000,000
	책임급	5,000,000
	선임급	4,000,000
	석사급	3,000,000
	학사급	2,500,000
연구근접 지원인력	별호	3,500,000
	석사급연구 근접지원인력	2,500,000
	학사급연구 근접지원인력	2,200,000

구분	직급	월급여액 최대치		증가
		개정 전	개정 후	
연구자	별호	6,760,560	8,000,000	1,239,440
	수석	5,070,420	6,000,000	929,580
	책임급	4,225,350	5,000,000	774,650
	선임급	3,380,280	4,000,000	619,720
	석사급	2,535,210	3,000,000	464,790
	학사급	2,112,680	2,500,000	387,320
연구근접 지원인력	별호	2,957,750	3,500,000	542,250
	석사급연구지 원인력	2,112,680	2,500,000	387,320
	학사급연구지 원인력	1,859,150	2,200,000	340,850


 이제 예상한
금액을 받는 듯
책임급
연구원


 4대보험 기관부담분,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방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분, 퇴직급여충당금 기준단가 및 참여율에 포함	4대보험 기관부담분, 퇴직급여충당금 기준단가 및 인건비 계상률에 불포함

Q. 참여연구자의 4대 보험 기관부담금 계상 방법은?


-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 지급 가능
- 이 때,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분담할 필요는 없음**

〈기존〉 여러 개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에 따라 4대보험 기관부담분을 분담했던 방식

〈개정〉 인건비 계상률에 불포함되므로, 과제별 분담 의무 없음.

자유롭게 과제별 예산 고려하여 4대보험 기관부담분 집행 허용

주요 개정사항 - 비목별 산정기준-인건비


 최소 인건비 계상률 필수과제의 경우 - 인건비 계상률 및 소요예산 [예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분, 퇴직급여총당금 기준단가 및 인건비 계상률에 포함	4대보험 기관부담분, 퇴직급여총당금 기준단가 및 인건비 계상률에 불포함
	4대보험기관부담분 월 급여의 10% 계상 원칙	4대보험기관부담분 월 급여의 9% 계상 원칙
	퇴직급여총당금 적립액 기준 없음	퇴직급여총당금 적립액을 월급여의 1/12 로 명시

[인건비 계상률 60% 필수 과제] : 근로계약서 월 급여 상승 조정하는 방법, 연간 인건비 추가소요액을 실행예산변경을 통해 반영 필요

개정전


직급 (1)	기준단가 (2)	참여과제명 (과제번호)	참여율 (9)=(6)/(2)	월급여 (3)	기관부담분(월) (4)=(3)x10%	퇴직적립금(월) (5)	월지급액 (6)	참여개월수 (7)	총지급액 (8)
책임급	5,000,000	한국연구재단	60.00%	2,535,210	253,520	211,270	3,000,000	12	36,000,000

개정후

직급 (1)	기준단가 (2)	참여과제명 (과제번호)	인건비 계상률 (9)=(3)/(2)	월급여 (3)	기관부담분(월) (4)=(3)x9%	퇴직적립금(월) (5)	월지급액 (6)	참여개월수 (7)	총지급액 (8)
책임급	5,000,000	한국연구재단	60.00%	3,000,000	270,000	250,000	3,520,000	12	42,240,000

차이	464,790	16,480	38,730	520,000	연간 인건비 추가 소요액	6,240,000
----	---------	--------	--------	---------	------------------	-----------

주요 개정사항-비목별 산정기준-인건비


 최소 인건비 계상률 필수과제의 경우-인건비 계상률 및 소요예산 [예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분, 퇴직급여총당금 기준단가 및 인건비 계상률에 포함	4대보험 기관부담분, 퇴직급여총당금 기준단가 및 인건비 계상률에 불포함
	4대보험기관부담분 월 급여의 10% 계상 원칙	4대보험기관부담분 월 급여의 9% 계상 원칙
	퇴직급여총당금 적립액 기준 없음	퇴직급여총당금 적립액을 월급여의 1/12 로 명시

<인건비 계상률 60% 필요 과제> : 기준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4대보험 기관부담분 감소로 인건비 소요예산 감소
개정전


직급	기준단가	참여과제명	참여율	월급여	기관부담분(월)	퇴직적립금(월)	월지급액	참여개월수	총지급액
(1)	(2)	(과제번호)	(9)=(6)/(2)	(3)	(4)=(3)x10%	(5)	(6)	(7)	(8)
책임급	5,000,000	한국연구재단	60.00%	2,535,210	253,520	211,270	3,000,000	12	36,000,000


 개정후

직급	기준단가	참여과제명	인건비 계상률	월급여	기관부담분(월)	퇴직적립금(월)	월지급액	참여개월수	총지급액
(1)	(2)	(과제번호)	(9)=(3)/(2)	(3)	(4)=(3)x9%	(5)	(6)	(7)	(8)
선임급	4,000,000	한국연구재단	63.39%	2,535,210	228,170	211,270	2,974,650	12	35,695,800

차이		-25,350	0	-25,350	인건비 연간 소요예산감소	-304,200
----	--	---------	---	---------	------------------	----------

주요 개정사항-비목별 산정기준-인건비


 인건비 계상기준 및 계상률 변경사항 [예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분, 퇴직급여총당금 기준단가 및 인건비 계상률에 포함	4대보험 기관부담분, 퇴직급여총당금 기준단가 및 인건비 계상률에 불포함
	4대보험기관부담분 월 급여의 10% 계상 원칙	4대보험기관부담분 월 급여의 9% 계상 원칙
	퇴직급여총당금 적립액 기준 없음	퇴직급여총당금 적립액을 월급여의 1/12 로 명시

< 개정 전 >


직급 (1)	기준단가 (2)	참여과제명 (과제번호)	참여율 (9)=(6)/(2)	월 급여 (3)	기관부담분(월) (4)=(3)x10%	퇴직적립금(월) (5)	월지급액 (6)	참여개월수 (7)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총지급액 (8)
책임급	5,000,000	한국연구재단	60.35%	2,550,000	255,000	212,500	3,017,500	12	2021-03-01	2022-02-28	36,210,000

< 개정 후 >

직급 (1)	기준단가 (2)	참여과제명 (과제번호)	인건비 계상률 (9)=(3)/(2)	월 급여 (3)	기관부담분(월) (4)=(3)x9%	퇴직적립금(월) (5)	월지급액 (6)	참여개월수 (7)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총지급액 (8)
책임급	5,000,000	한국연구재단	51.00%	2,550,000	229,500	212,500	2,992,000	12	2021-03-01	2022-02-28	35,904,000

인건비 계상률 변경 및 4대보험 기관부담분 감소로 인해
 3월부터 참여연구자 변경 신청 필요
 - 다른 변경이 없는 경우 시스템 일괄 적용 계획예정(별도 안내)


주요 개정사항 - 비목별 산정기준-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 [별표1] 비목별 산정기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학생 인건비	학석사 통합과정 언급 없음	학석사통합과정 기준단가 신설
		기준단가 180만원(석사 동일)
		2021년 2학기부터 적용
		학석사연계과정생도 해당 단가 적용 (학석사연계과정 활성화 취지)

[별표1] 학생연구자 직급별 기준단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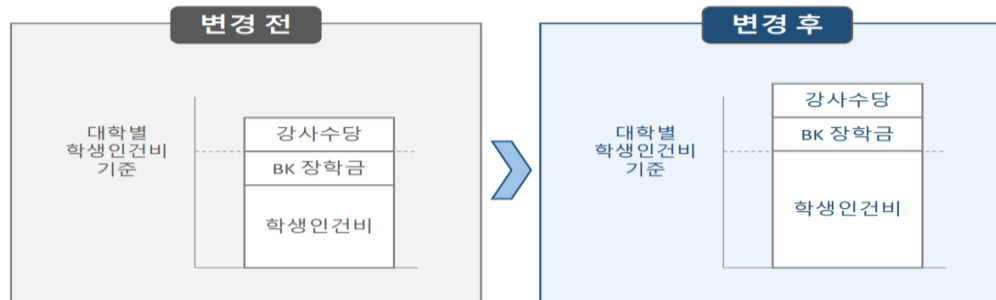
구분	직급	월기준액	비고
학생연구자	박사과정	2,500,000	
	석박사통합과정	2,500,000	
	석사과정	1,800,000	
	학석사 통합과정	1,800,000	신설-2021년 2학기부터 적용
	학사과정	1,000,000	


 학생인건비 - [별표1] 비목별 산정기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인건비 지급률 계상시 제외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연구과제 참여 인건비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인건비 기타 단기소득 창업소득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연구과제 참여 인건비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인건비 기타 단기소득 창업소득 제외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인건비, 장학금

[별표1] 학생연구자 직급별 기준단가표

구분	직급	월기준액
학생연구자	박사과정	2,500,000
	석박사통합과정	2,500,000
	석사과정	1,800,000
	학석사통합과정	1,800,000
	학사과정	1,000,000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제한이 완화됩니다!
 

 “ 학생연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연구활동비-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개정 [별표1] 비목별 산정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대학 자체기준으로 위임한 사항 명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연구 활동비	원고료, 세미나강사료, 자문료 기준 있으나 다른비용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고료, 자문료 기준 유지 <u>세미나강사료 조정</u> <u>회의수당,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 기준 신설</u>
	출장비 적용시 타 기관 소속 대표·임원 기준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기관 소속 대표·임원의 경우 : <u>연봉 혹은 경력에 따라 등급 적용 가능</u>
	출장비 버스운임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장비 버스운임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u>등급구분 없이 실비 정산</u>

주요 개정사항-비목별 산정기준-연구활동비

<기존 상한액>
 연구책임자급 : 800,000원
 연구원급 : 600,000원


연구활동비-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개정 [별표1] 비목별 산정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대학 자체기준으로 위임한 사항 명시

1. 회의수당·원고료·강사료·자문료 지급 상한액

구분	회의수당 (1회/3시간미만)	원고료 (A4 1장당)	세미나 강사료 (1회당)	자문료 등 (1회당)
연구책임자급 (전임교원 이상)	20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1,000,000원 이내	500,000원 이내
연구원급 (책임급 이하)	20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800,000원 이내	500,000원 이내
외국인 과학자	대상자의 경력 또는 직위에 따라 합리적인 금액을 연구책임자가 정함			

2. 번역료 지급 상한액(신설)

번역 대상 언어	번역 결과언어	지급 기준
일어, 중국어 영어 포함 그 외 외국어	한국어	띄어쓰기포함 800자 당 50,000원 이내 230 단어(words) 당 50,000원 이내
한국어	일어, 중국어 영어 포함 그 외 외국어	띄어쓰기포함 800자 당 85,000원 이내 230 단어(words) 당 85,000원 이내

3. 통역료 지급기준(신설)

통역구분	언어구분	3시간	6시간	규정 외 시간
순차통역	영어	300,000원	600,000원	100,000원
	일어	300,000원	600,000원	100,000원
	독어, 중국어 등	300,000원	600,000원	100,000원
동시통역	영어	500,000원	700,000원	100,000원
	일어	500,000원	600,000원	100,000원
	독어, 중국어 등	500,000원	600,000원	100,000원

4. 속기료 지급기준(신설)

구분	단가	비고
속기기본	시간당 300,000원	1급 속기사 기준
녹음재생	시간당 350,000원	
전문분야	시간당 350,000원	
외국어	시간당 400,000원	
요점	시간당 200,000원	

▶ 전자문서 보관 근거 신설 (제35조 제2~3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제35조(연구 문서의 관리)

-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 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③ 그 밖에 증명자료의 보관에 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산학협력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전자문서기능 확대 예정
전면 도입에 대한 사항은 별도 안내**

 연구비 부정행위 유형 명시

- ▶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
- ▶ 연구비 지출 증명자료 위·변조
- ▶ 사용실적 거짓 보고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 매뉴얼 배포시 업데이트 예정

▶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 간접비 예산 편성 및 집행 원칙 신설
- ▶ 간접비를 지원 배분받은 연구소의 역할 신설
-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원칙, 지급 절차 및 기준 마련 명시

※ 원칙 : 당해연도 간접비 10%내에서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 모두 포함 성과평가 실시 후 지급,

특정인 대상 마일리지 지급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포함 간주

- ▶ 간접비 사용용도 중 연구지원금 중 **연구활동지원금** 구체적으로 명시

: 대학·연구자 연구활동지원 목적 산학협력단장 정하는 사업 신설 <별표6>

주요 개정사항-간접비 사용기준

[별표6] 간접비 사용 연구활동 지원사업

항목	세부지원내용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 구입비	가. 학술용 도서 등 문헌구입비 나. 디지털 도서 및 전자정보 구입비 다. 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가. 시약 및 재료비 라. 비품 구입비 사. 교육훈련비 자. 국내외 출장여비 : 연구목적 출장	나. 수용비 및 수수료 마. 전문가활용비 아. 연구공간 사용료 혹은 임차료 다. 회의비 바. 시험분석료
학술대회 지원비	가. 학술대회 참가비 및 등록비 다. 학술대회 개최 경비 마. 학회회비 : 종신회비 제외	나. 학술대회 참가에 필요한 출장비 라. 학술지 발간경비
논문게재료	가. 논문게재료 다. 저서출판비(학술저서 지원비 포함)	나. 논문교정료(영어논문 교정 지원 포함) 라. 논문별 인쇄본 구입비
대학 연구활동지원	가. 중대형 연구과제 준비 지원 나. 대학 발전 정책 연구과제 지원 다. 연구과제 보증보험 및 인지세 지원 라.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지원(4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 포함) 마. 우수 연구교수 혹은 박사후 연구원 인건비 지원 (4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 포함) 바. 대학원생 연구실 환경 개선 지원 사. 대학원생 인건비 혹은 장학금 지원	
교수 연구활동지원	가. 교수 특성화 전문 연구과제 및 활동 지원(신설) 나. 신진 교원 연구 정착지원 다. 교내 학술 연구과제 지원 라. 기타 교원의 연구력 강화를 위한 과제 및 활동 지원 등	

연구지원금
사용항목 등

※ 산학협력단장은 상기 지원사업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침 구조개편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제 1 장 1. 가. (1)	제 1 장 제 1 조 ① 1. 가.	개정 전 제, 조, 항, 호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지침 체계가 미흡하고, 지침 관련 명확한 의사전달 어려움 존재

사업신청 검토사항 중 대응자금 지원 관련 별도 지침 명시(제3조 제4항)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지원 세부지침(2020.12.29.) 적용

▶ 주요 유의사항

구분	내용	대응자금 신청기한
산학협력단장 결정사항	①대응자금 필수지원 요건&정부출연금 10% 이내 ②사업비의 5% 이내	연구과제 신청 마감 10일전 까지 대응자금신청서 제출
정책지원위원회 결정사항	①, ② 를 초과하여 지원 신청하는 경우	신청마감 1개월 전까지 대응자금신청서 제출

연구과제 신청 시 간접비 최소 기준 산학협력단 협의 사항 신설 (제31조 제3항)

기존	개정	개정사유
지원기관 별도 간접비 최대치 기준 징수시 사전 협의 미대상	지원기관 별도 간접비 최대치 기준 5% 미만인 경우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 필요	협약 전 지원기관과의 조정 가능성 혹은 산학협력단 내부적으로 현황 파악 필요하여 명시 협약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님

▶ 연구과제 협약서에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가능성 검토 조항 신설(제50조 제1항)

▶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소지가 예상 되는 협약의 경우 사전 공지 목적

- 지식재산권 관련 독소조항 예시 : 불가능한 문구
 (침해보증책임) 학교는 기업이 연구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문제점) **침해 판단은 고도의 전문성과 비용을 소요**하므로,
 이를 보증하면서 연구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

- 수정안
 - 1안) 침해보증불가
 - 2안) 학교가 연구결과물이 제3자의 침해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경우(고의)에 한하여 침해에 대한 보증
 - 3안) 연구비의 한도내에서 침해에 대한 보증
 - 4안) 1, 2, 3안 불가능한 경우 산학협력단 내부 검토 후 계약 불가 혹은 연구자 확인서 수령 후 계약

▶ 연구비카드제 관련 개정(제4장 제13조~제15조)

- ▶ 연구비 카드 종류 및 발급 관리 사항을 <별표3>으로 분리
- ▶ 연구비 카드 발급·사용에 대한 유의사항, 연구비 카드 사용시 정산기한 명시
- ▶ 카드해지 문구 통일

▶ 연구비 선배정 지원 제도 개정(제5장 제16조)

- ▶ 지원대상 : 연구비 지원이 확정된 연구과제 → 연구과제 선정 확정된 과제
- ▶ 지원시기 : 연구시작일 이후 → 연구시작일부터

▶ 사용실적보고 작성 시 유의사항 신설 : 제27조 제3항

▶ 물품관리 등재 대상 문구 수정 및 예외사항 신설(제36조제1항)

- ▶ 본교 자산 등재대상수정
 - 50만원이상(부가세포함) → **단가** 5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이고, **1년 이상 사용가능한 경우**
- ▶ 본교 자산 등재 예외 조항 신설 :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하는 경우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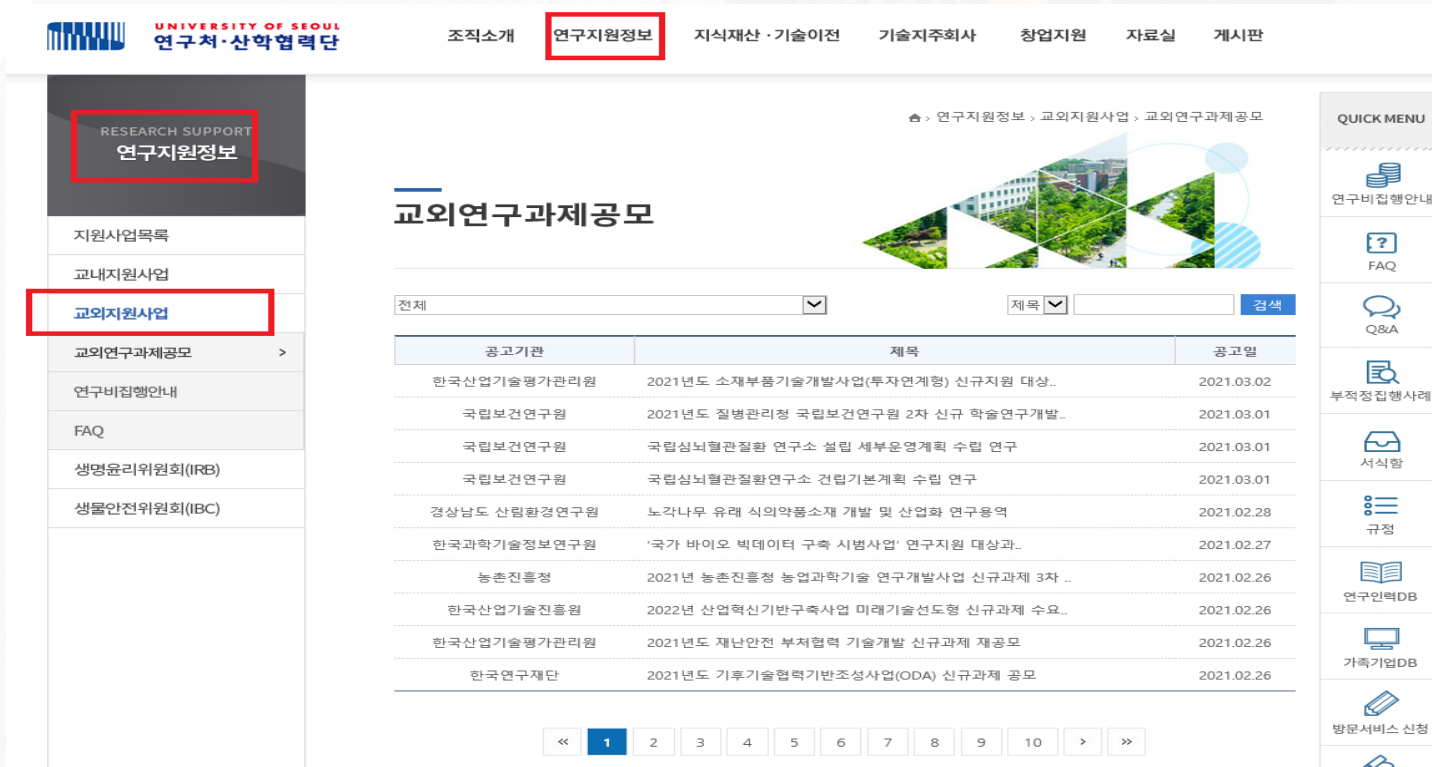
▶ 연구비 감사 개정(제11장): 연구비 감사와 회계감사구분, 감사인 명시

▶ 별지서식 개정

- ▶ (별지서식 제2호) 연구계획서 세목별 작성 부분 불필요하여 삭제
- ▶ (별지서식 제6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개정

과제 공고 정보 제공

- ▶ 협약파트 공문, 메일 안내
-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http://research.uos.ac.kr/> - 연구지원정보 - 교외지원사업



The screenshot shows the 'RESEARCH SUPPORT 연구지원정보' page. The '교외지원사업' (Off-campus Support Projects) menu item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table of '교외연구과제공모' (Off-campus Research Project Calls) with columns for '공고기관' (Institution), '제목' (Title), and '공고일' (Date).

공고기관	제목	공고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1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형) 신규지원 대상..	2021.03.02
국립보건연구원	2021년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2차 신규 학술연구개발..	2021.03.01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심뇌혈관질환 연구소 설립 세부운영계획 수립 연구	2021.03.01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심뇌혈관질환 연구소 건립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1.03.01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노각나무 유래 식의약품소재 개발 및 산업화 연구용역	2021.02.2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연구지원 대상과..	2021.02.27
농촌진흥청	2021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3차 ..	2021.02.2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미래기술선도형 신규과제 수요..	2021.02.2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1년도 재난안전 부처협력 기술개발 신규과제 제공모	2021.02.26
한국연구재단	2021년도 기후기술협력기반조성사업(ODA) 신규과제 공모	2021.02.26

Navigation: << 1 2 3 4 5 6 7 8 9 10 >>


과제공고 정보 제공

▶ NTIS 공고 사이트 : <https://www.ntis.go.kr/> - 과제참여관리 - 국가R&D 통합공고

R&D의 모든 것!

NTIS

통합검색 ▼

단계별검색
디렉토리검색

국가R&D전주기
과제참여·관리
 연구자정보

중장기계획·예산·사업
R&D에타로(路) N
사업및기관성과평가

국가R&D통합공고
 유사과제
 과학기술표준분류추천
 R&D제도문의
 과제및성과입력(SIMS)
 제재정보조회
 과제평가결과조회

국가R&D참여인력
 국가연구자번호
 평가위원후보추천
 이력정보관리
 위원회추천

NTIS소개
 공지사항
 이용문의

과학기술뉴스
 카드뉴스
 뉴스레터

과찬의말씀
 활용가이드

로그인
메뉴

국가R&D통합공고

국가R&D통합공고 키워드 검색

공고기관 검색
 첨부파일명 검색

공고정보
R&D사업일정
MY공고
알리미신청
RSS신청


공고형태 ▶	전체	통합공고	개발공고	도출말	공고현황 ▶	전체	접수예정	접수중	마감
부처명 ▶	전체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다부처	기타	설정초기화

2018년 이전 국가R&D통합공고는 접수일, 접수마감시간, 공고형태, 공고유형, 공고규모, 문의처, 사업명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고일 ~
 공고유형 전체
 공고규모 전체
 마감일 전체
검색

검색결과 42,395건
이용자 메뉴얼 다운로드
등록신청
엑셀리스트 다운로드
10 개 ▼ 적용

<input type="checkbox"/>	순번	현황	부처명	공고명	접수일 ↓	마감일 ↓	D-day
<input type="checkbox"/>	42395	접수예정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형)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1.03.15	2021.03.31	D-28
<input type="checkbox"/>	42394	접수중	질병관리청	국립심뇌혈관질환 연구소 설립 세부운영계획 수립 연구	2021.03.02	2021.03.12	D-9
<input type="checkbox"/>	42393	접수중	질병관리청	국립심뇌혈관질환연구소 건립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1.03.02	2021.03.12	D-9
<input type="checkbox"/>	42392	접수중	질병관리청	2021년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2차 신규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입찰 공고	2021.03.01	2021.03.31	D-28
<input type="checkbox"/>	42391	접수예정	기타	노각나무 유래 식의약품소재 개발 및 산업화 연구용역	2021.03.12	2021.03.12	D-9
<input type="checkbox"/>	42390	접수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연구지원 대상과제 조사 공고	2021.03.02	2021.03.19	D-16
<input type="checkbox"/>	42389	접수중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원제도 시행계획(1차) 공고	2021.03.26	2021.03.30	D-76


 연구지원 서비스 개선 설문조사: 매년 2회 실시

▶ 2021년 1월 시행 설문조사 결과 요약: 총 응답자 수 340 명

연번	조사항목	점수 환산		
		2021년 1차	2020년	증감
1	업무처리 투명성	78.46	76.07	▲2.39
2	업무처리 책임성	76.99	75.00	▲1.99
3	문제해결 위한 노력	72.40	69.50	▲2.91
4	행정부담 완화 및 연구관리 효율화	69.78	69.72	▲0.05
5	애로사항 모니터링 및 피드백	61.21	61.47	▼0.26
평균점수		71.77	70.35	▲1.42


1~4번은 만족도 상승하였으나, 5번 애로사항 모니터링 및 피드백 점수가 전년대비 하락

▶ 연구지원 서비스 개선 설문조사: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서비스 강화 위한 자유의견 정리

구분	세부의견
담당자 잦은 변경 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전문성을 갖춘 담당 직원의 변경이 빈번하지 않아야 업무가 안정적으로 처리됨 담당자 변경시 산학협력단에서 일정 기간을 두고 인수인계 필요
자세한 매뉴얼 및 업무처리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비처리를 위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담당자마다 다른 방식(행정서류 준비 등)에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음 정산 등을 할 때 필요한 꼼꼼한 매뉴얼 필요 (ex. 자주하는 질문, 연구원들이 정산시 주로 실수하는 내용 등)
연구자와 상호 협력 지원 마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진행시 같이 해결방법을 찾는 방식의 업무 필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교원들의 불만 내용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행정처리 간소화, 종이서류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이서류제출 폐지 비대면 제출(이메일) 방식으로 서류처리가 간소화 행정관련 서식 작성을 산학협력단에서 주도적으로 지원
정보제공 및 사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된 정보는 팝업으로 공지 맞춤형 과제 정보 제공 연구자가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행정적인 일들에 대해 미리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공지
산학협력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속장애, 복잡한 정산절차, 기타 신청 등 시스템적 개선사항 업무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를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 필요
연구과제 수주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과제 신청 준비시 산학협력단의 행정업무 지원 확대 대형과제 추진을 위한 one-stop 채널 (또는 전문 담당 직원) 필요
대학원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역량이 있는 대학원생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 석사 혹은 박사 학생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주요 개선 계획 사항>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개편 계획
: 사용자 중심 화면 및 정보제공 목적
- 산학협력단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 제공 계획
: 실시간 정보제공
- 신진교원 교내연구비 지원
: 상,하반기 2회로 지원
- 우수논문지원비 증빙자료 종이서류 제출 생략
: 스캔자료 대면 제출로 같음
- 대학원생 우수논문지원비 지급 확대
- 각종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등 정보제공
- 산학전략 TF 구성 산학협력단 발전 계획 추진 등
- 산학협력시스템 고도화 : 전자서명 등 추진


 산학협력단-연구과제, 산학협력 성과, 연구실 홍보 플랫폼 역할

홍보및언론보도대상


- 우리 대학 기여도 파급효과 높은 연구과제 혹은 대형 연구과제 수주
- 기술이전, 가족회사 협약, 산학협력 관련 MOU
- 지식재산권, 학술논문 학술대회 개최, 교원 창업 등 연구성과 창출
- 기타 학문분야 발전, 사회문제해결 기여 산학협력 사례 등

세부추진계획

- 산학전략TF, 산학협력 중점교수, 연구자와 협의를 통해 보도자료 작성
- 기획처 협조하여 보도자료 배포
- 성과 고려 하여 우수사례 표창 등 추진

기대효과

- ✓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연구 및 산학협력 성과 홍보 체계 구축
- ✓ 연구 및 산학협력 홍보를 통한 우수 대학원생 혹은 신진인력 확보 기대
- ✓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우수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 공유로 성과 확산
- ✓ 관련 산업체와의 구체적인 연계 기대


인문사회분야 혁신법 적용 관련 문의

구 분	2020년	2021년	비고 (한국연구재단 김서연 담당자 042-869-6209)																								
학생인건비	학석사졸업생, 타기관 소속 학생 연구원 지급 가능	학석사졸업생, 타기관 소속 학생 연구원 지급 불가	타기관 소속 학생 연구원은 인건비로 지급																								
회의비	소속 기관 연구자간 회의비 집행 가능	소속 기관 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비 집행 불가	1.1일자로 적용																								
논문게재료	종료후 사용 가능	과제 종료 후 사용 불가(정산 잔액 반납)	2020년 종료된 과제까지만 사용 가능 (2021년 계속과제는 사용 불가) * 한국연구재단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비 정산	Ezbaro 사용	통합 Ezbaro 사용(NTIS 발급 필요)	2020년 협약한 과제는 Ezbaro에서 구비목으로 정산(사용 기준은 혁신법에 맞춰 사용 필요)																								
결과평가	양호/미흡/불량 등급 적용 (미흡: 참여제한 3년, 불량: 참여제한 5년)	양호/미흡/불량 등급 적용 (불량: 참여제한 2년, 제재 부가금 부과) * 최종 결과물 제출시까지 신규과제 신청 제한	-																								
비목체계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기존(3비목 6세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인건비</td> <td>전문인건비</td> </tr> <tr> <td>학생인건비</td> </tr> <tr> <td rowspan="4">직접비</td> <td>장비·재료비</td> </tr> <tr> <td>학술연구비</td> </tr> <tr> <td>학술활동수당</td> </tr> <tr> <td>-</td> </tr> <tr> <td>간접비</td> <td>간접비</td> </tr> </tbody> </table>	기존(3비목 6세목)		인건비	전문인건비	학생인건비	직접비	장비·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활동수당	-	간접비	간접비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변경(2비목 8세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직접비</td> <td>인건비</td> </tr> <tr> <td>학생인건비</td> </tr> <tr> <td>연구시설·장비비</td> </tr> <tr> <td>연구재료비</td> </tr> <tr> <td>연구활동비</td> </tr> <tr> <td>연구수당</td> </tr> <tr> <td rowspan="2">간접비</td> <td>위탁연구개발비</td> </tr> <tr> <td>간접비</td> </tr> </tbody> </table>	변경(2비목 8세목)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2021년 신규협약된 과제는 변경된 비목 사용 2020년에 시작한 계속과제의 경우는 구비목으로 정산은 하되, 사용기준은 혁신법에 맞춰 사용하고, 다음차년도가 존재하는 경우 이월금 산정 시 변경된 비목에 맞춰서 이월 필요
	기존(3비목 6세목)																										
인건비	전문인건비																										
	학생인건비																										
직접비	장비·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활동수당																										
	-																										
간접비	간접비																										
변경(2비목 8세목)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 연구지원인력 근로계약서 변경 관련 질문

- ▶ 기존 학사급 연구지원인력 기준단가 : 220만원
- ▶ 2021. 3월 근로계약서 갱신시 : 근로계약서 220만원까지 수정 가능
- ▶ 4대보험 기관부담금 19.8만원(220만원x9%), 퇴직급여총당금 18.3만원(220만원/12개월)
별도 예산 편성하여야 함

▶ 부가세 과세 적용 과제 마지막 달 연구활동비 사용 어려움 해결 요청


- ▶ 부가세 과세 적용 과제의 경우 공급가액만 집행액으로 계상
- ▶ 마지막 달에 부가세 매입세액을 고려하여 공급가액만 계산하여 연구비를 사용해야 함
- ▶ 과제 개별 담당자와 상의 및 협의

▶ 연구노트 규정 관련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1 일부개정)
- ▶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노트 관리지침(2009. 9. 8) - **지침 개정 검토 중**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주요사항 >

구분	종전	개편
연구노트 작성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협약에 따라 <u>작성/미작성 여부</u>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협약*에 따라 보고서로 대체 여부 결정 • 사전조사·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관리,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산학협력단·연구처 각 팀, 파트별 주요 업무 및 연락처

팀	팀장/파트장	주요업무	연락처 및 이메일
정책기획팀	팀장 : 황윤지	정책기획팀 총괄	02-6490-6350 / cjs201511036@uos.ac.kr
	기획서무파트 : 신유정	시스템, 통계, 산학기획	02-6490-6363/jjeong1005@uos.ac.kr
	산학운영, 감사, 구매파트 : 김연희	계약학과, 간접비지원사업, 연구비 감사, 구매 계약	02-6490-6388/rose33k@uos.ac.kr
경영지원팀	팀장 : 양수정	경영지원팀 총괄	02-6490-6395/soojung126@uos.ac.kr
	협약파트 : 박정은	사업신청, 계약 총괄	02-6490-6370/jep99@uos.ac.kr
	산학지원1파트 : 민윤주	도시과학대학 연구과제 관리	02-6490-6381/joo713@uos.ac.kr
	산학지원2파트 : 조영미	공대, 자연과학대학 연구과제 관리	02-6490-6391/ad0208@uos.ac.kr
	산학지원3파트 : 최선미	기타 단과대학, BK 사업 관리	02-6490-6382/sylve35@uos.ac.kr
	재무회계파트 : 이정호	산학협력단 회계 총괄	02-6490-6361/yejh2000@uos.ac.kr
기술사업화팀	팀장 : 나신철	기술사업화 팀 총괄	02-6490-6366 / ipscna6366@uos.ac.kr
	성과확산파트 : 김권범	기술이전, 특허, 학교기업, 중소기업센터	02-6490-6373 / ip@uos.ac.kr
연구지원과	팀장 : 황윤지	연구지원과 총괄	02-6490-6352/lymongji@uos.ac.kr
	연구기획파트 : 박명지	연구기획, 기초R&D	02-6490-6352/lymongji@uos.ac.kr
	연구지원, 연구윤리파트 : 이영호	우수논문지원, 교내연구비, 연구윤리 총괄 등	02-6490-6353/yh0930@uos.ac.kr



03

신규 산학협력 시스템 사용설명

발표자 : 바자울정보통신 정진욱 부장



04

질의응답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